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4. 27.

대전광역시장

2. 건 명 :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3. 안 건 요 지 : 따 로 붙 임

4. 검 토 의 견 : 따 로 붙 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9년 5월 일

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**연 정 수**

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9년 4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경관기록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경관기록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(안 제10조).
- 나. 경관위원회의 중복심의 방지를 위하여 기능 일부를 정비함 (안 제22조).
- 다.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 등 세부운영기준 제정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함(안 제24조).

3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시의 변화하는 도시경관을 기록・보존하여 역사적,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고, 도시계획위원회 등 타 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중복심의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